

제3장 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1)





학습 개요

핵심 POINT

1. 금융실명거래제도의 도입배경과 궁극적 목적을 안다.
2. 계좌에 의한 거래시 금융실명제 준수방법을 숙지한다.
3. 무통장입금 거래시 금융실명제를 이행토록 숙달한다.
4. 어음·수표 거래시 금융실명제 이행 사항을 이해한다.

신분증 받으면 되는 거죠 ?

실명

1. 은행에서는 계좌신규시 반드시 개인으로부터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고 사본을 징구한다. 이는 본인확인을 통해 향후 예금주의 지급·해지 요청시 정당한 예금주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뿐만 아니라 은행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납세주체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3. 금융실명제 실시의 본연의 목적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통해 조세형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금융실명제 개요

정의

- ▶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는 반드시 거래자의 **실지명의** 즉, 실명으로 하여야만 한다는 제도」

목적

- 음성적인 자금거래의 방지
- 조세부담의 형평제고
- 사회정의의 실현
- 금융실명거래 - 재산형성에 대한 검증
- 금융거래비밀보장 - 재산권보호

변천사

- 1961. 7.29 「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1982.12.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 1993.8.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 1997.12.3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제정

✓ 금융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전문위원회에 발행한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에 따라 실제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실명제 강화에 고객예금자 '뭉칫돈' 이동 중…어디로?

금융실명제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세(稅)테크'가 이슈로 떠올랐다. (중략)

지난 5월, 금융실명제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고액 예금자들이 과세와 처벌을 피하고자 뭉칫돈을 빼간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중략)

한편 오는 29일부터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금융실명제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 탈세 등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개정법률'을 오는 29일부터 실행한다.

이번 금융실명제 강화로 기존에 처벌받지 않았던 탈세 목적의 차명계좌에도 처벌이 확대된다. 불법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행위를 위해 차명거래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은 고객이 계좌를 개설할 때 불법재산은닉이나 자금세탁, 탈법 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며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불법 목적이 아닌 선의의 차명거래인 가족 계좌나 동창회 회비 등은 종전과 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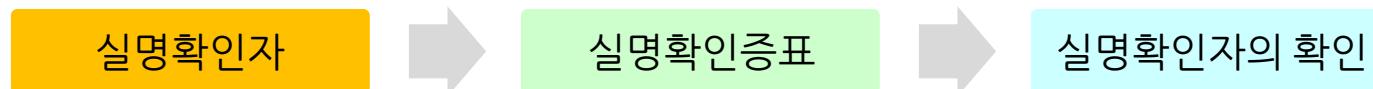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1. 실명확인의무

: 1993년 8월 12일 이후 금융기관은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 등을 의미

2. 실명확인방법



가. 실명확인자 : 실제로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직원

- 실명확인자는 실명확인업무에 대한 권한, 의무가 주어진 영업점(본부의 영업부서 포함)직원(계약직, 시간제 근무자, 도급직 포함)이며, 후선부서직원(본부직원, 서무원, 청원경찰 등)은 실명확인 할 수 없으나, 본부부서 근무직원이 실명확인 관련업무를 처리하도록 명령 받은 경우는 실명확인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아닌 임시사용인(카드모집인, 보험모집인, 공제모집인 등)등은 실명확인할 수 없음

나.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 증표에 첨부된 “사진”등에 의하여 명의인 본인여부를 확인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적으로 사용 가능)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개인

- ✓ **주민등록증이 원칙**.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유효한 증표도 가능

법인

-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은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경우 사용 가능

임의
단체

-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 납세번호증, 고유번호증
 - ☞ 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경우 : 대표자 개인의 실명확인증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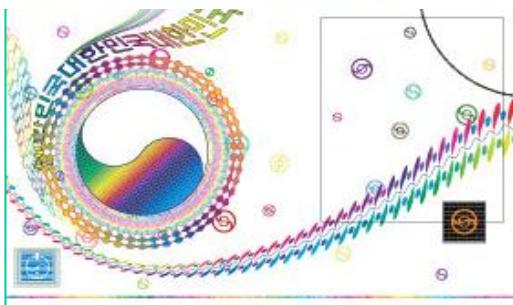
다. 실명확인자의 확인

- 실명확인자가 관련장표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직원번호 등) 생략할 수 있음

- ☞ 실명확인자와 전산조작자가 다른 경우 실명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참고]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 문양

› 바탕무늬

- 왼쪽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있습니다.

› 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202-81-02637

법인명(단체명) : (주) 신한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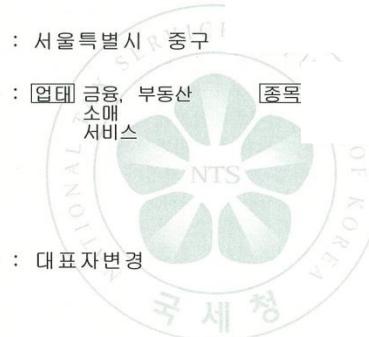
대 표 자

개업년월일 : 10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110111-0012809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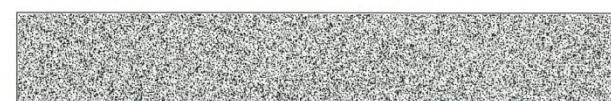
교부사유 : 대표자변경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여() 부(✓)

2011년 01월 06일

남대문 세무서장





확인서비스

인터넷발급문서전위확인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

본인서명발급사실확인

주민등록등초본발급진위확인

주민등록등초본발급내역확인

주민등록증진위확인/잠김해제

세대주확인

시공자확인

양수인확인

중점관리지정업체확인

전자분민서명확인

· 법정대리인동의

자주찾는 민원정보

▣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 전입신고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

▣ 병적증명서

▣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

▣ 지적도(임야도)열람.등본

▣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홈 > 확인서비스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 공인인증서로 사용자 확인 후 서비스 이용가능

인터넷에 의한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은 공인인증서로 본인확인을 하신 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번)에서도 전화로 누구나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진위확인 오류로 잠김(Lock)발생 시 "주민등록 잠김해제"로 본인이 직접 해제 가능합니다.

※ 5회 입력오류 발생 시 주민등록증 잠김.

▶ 주민등록증진위확인

▶ 주민등록 잠김해제

※ 암호화 프로그램의 설치여부를 묻는 '보안경고'창이 나타나면 "예"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 문양

▶ 바탕무늬

- 원족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있습니다.

▶ 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납니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움)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조잡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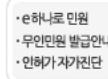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발견 시 조치요령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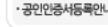


바로가기

- 프로그램내려받기
- 통합설치
- 발급기장프린터목록
- 자주묻는 질문
- 민원24마리하기



- e하나로 민원
- 무인민원 발급안내
- 인허가 차기진단



- 공인인증서등록안내



- 홍보동영상



- 고객센터

민원24사이트 이용문의

09:00~18:00(평일)

1588-2188

위로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라. 비대면 실명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함에 있어 대면확인이 원칙이나 대면하지 않아도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방식 중 2가지 이상을 활용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가능

- ① 거래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제출받아 확인
- ② 거래자와의 영상통화를 통해 확인
- ③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업무 위탁기관 등을 통하여 실명확인증표 확인
- ④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쳐 거래자 명의로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와의 거래를 통한 확인
-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확인
 - 금융회사가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을 거친 거래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
라목에 따른 생체정보를 직접 등록받은 후 이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식도 ⑤에 해당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3. 실명확인

생략 가능한 거래

• 통장, 거래카드(현금, 직불카드 포함) 등으로 입출금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통장 입금(송금)과 구별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라 함은 실명확인된 계좌의 입출금, 해지 및 이체 등을 말함(재예치 등 계좌가 새로 개설되는 경우는 계속거래가 아님)

✓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 100만원 이하의 원화 또는 그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송금 (무통장입금 포함)과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 매입.매각

✓'97.12.31~'98.12.31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 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1)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2) 외국환거래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3)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 보험.공제거래, 여신거래, 골드(실버)바 거래, 상품권 거래는 실명거래대상에서 제외

✓ (할인어음은 실명확인 대상임)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4. 불법·탈법 차명 거래 금지

- 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이하 “불법 차명거래”) 금지
- 나. 설명의무 : 금융회사는 계좌개설시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거래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 받아야 함
- 이행 시기(계좌개설시)
 - 일괄 계좌개설 : 1차 실명확인시
 - 컴퓨터 등에 의해 계좌 신규 개설(31쪽 바목) : 연결계좌 신규시
 - 통장형식으로 채권 발행 : 채권 발행시(계좌개설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통장 개설)
 - 이행 상대방(계좌개설거래 상대방)
 - 일괄 계좌개설 : 사업주, 학교장, 부대장 등
 - 예금 양수도 : 양수인
 - 실명확인업무 대행(위수탁) 업무로 은행에서 증권계좌 개설시 수탁기관 계좌개설 직원이 설명의무 이행
 - 다만,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불법차명 거래금지 의무’설명확인서 징구 불필요
 - ① 신규계좌개설 신청서식상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설명 문구를 포함
 - ② 금융회사 내규에 계좌개설시 ‘불법차명거래금지 의무’를 설명토록 규정



불법 차명거래 금지

- ✓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 개정취지
 -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의 방지
 - ☞ '차명거래'란 금융자산의 실소유자와 예금 명의자가 다른 경우(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 ✓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 금지
 - 제재사항
 - ①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 ✓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대한 설명의무
 -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에게 불법 차명거래 금지됨 설명
 - 대리인에 의한 금융거래는 대리인에게 설명의무 이행
 - 계좌개설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징구 필수
 - 제재사항 : 과태료 부과(건당 50만원)
- ✓ 유의사항
 - a. 고객의 금융거래가 차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불법 차명거래가 위법임을 설명하고 계좌 개설시 '설명의무확인서'를 반드시 징구
 - b. 고객상담 및 영업 행위 중 차명거래를 권유하는 등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금융실명거래의 원칙

- ✓ 고객의 다음 유형의 불법 차명거래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a. 불법재산 은닉

- 불법도박자금 은닉을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b. 강제집행 면탈

-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c. 자금세탁(조세포탈)

-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자금을 예금하는 행위
-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

※ 예외사례

- ① 계·부녀회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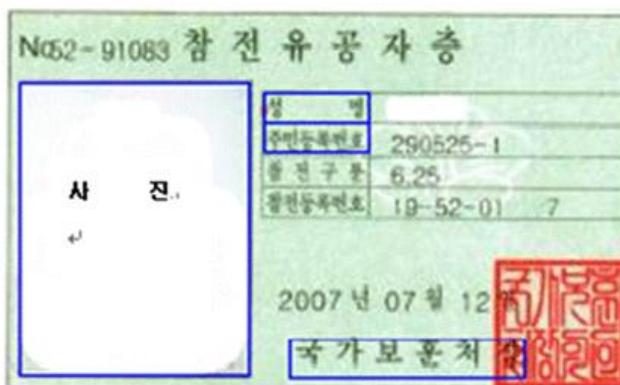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 ① **일반인**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확인 신청서 포함), 운전면허증,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노인복지카드(경로우대증),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포함), 여권, 선원수첩, 국가(독립, 5.18등) 유공자(유족 포함)증, 새터민임시신분증(여권번호와 같이 조립)
 - ② **학생** :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학생증의 경우 '미성년자'참조)
 - ③ **군인** : 군운전면허증
 - ④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⑤ **재외국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2016.6.30.까지 유효),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⑥ **외국국적동포** :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 ⑦ **소년소녀 가장** :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 것), 학교장이 확인한 서류
 - ⑧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초본 +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⑨ **국가기관(입법, 사법,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상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 시와 군 및 구)가 발급한 신분증·자격증·면허증**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장 또는 국민안전처장 발급)
- * 위 예시에 기재된 증표의 경우 국가기관 등이 발급한 것으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해 본인확인이 가능해야 함

[참고] 개인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경로우대대상 및 할인범위		
전국	할인율	
대상업종	고속철도차량(KTX) 및 전업자	30%
- 단, 고속철도차량(KTX) 및 새마을호는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통근열차	50%	
지하철	100%	
고궁·능원	100%	
국·공립박물관	100%	
국·공립공원	100%	
경로우대업소는 www.jungnang.seoul.kr 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명확인증표관련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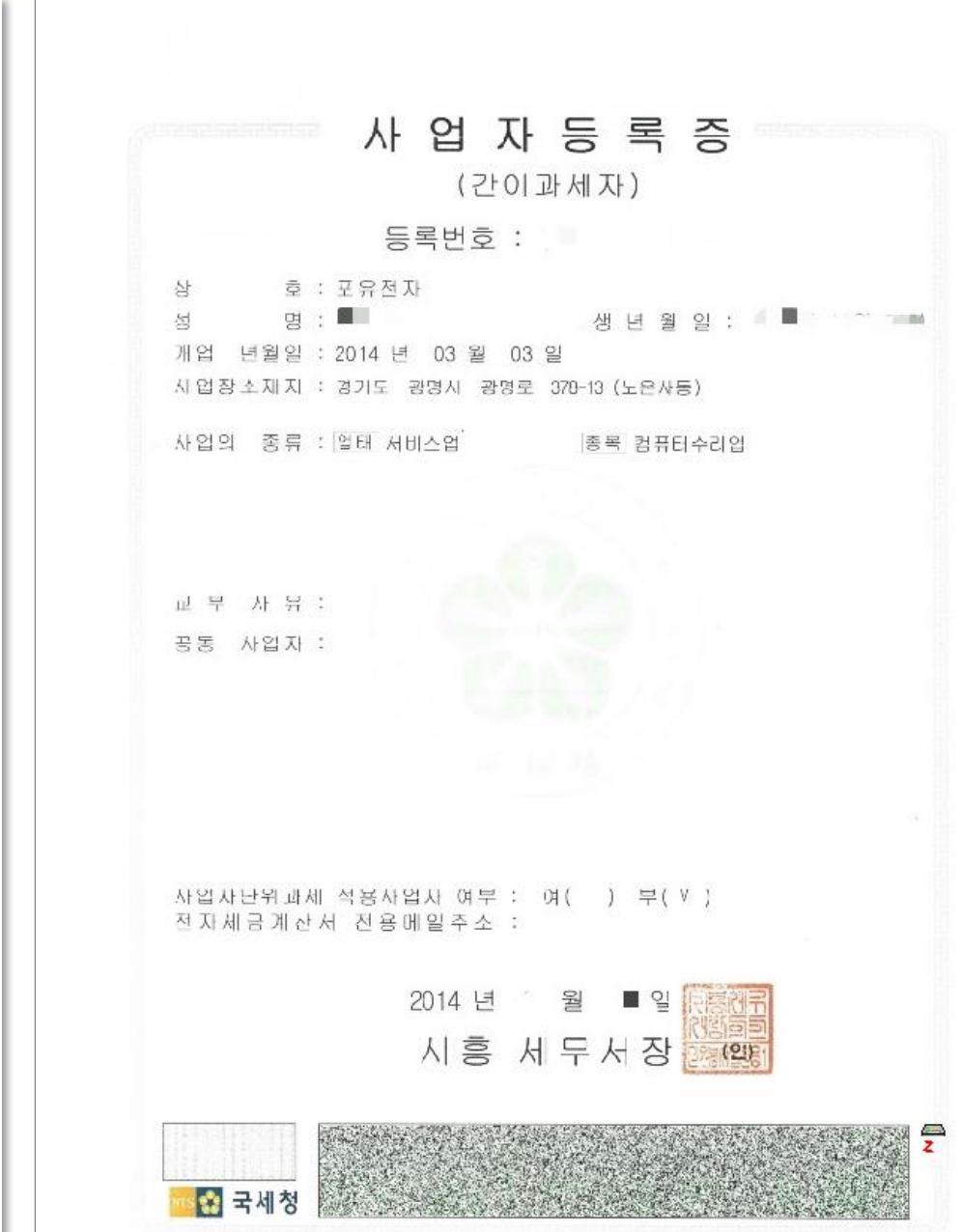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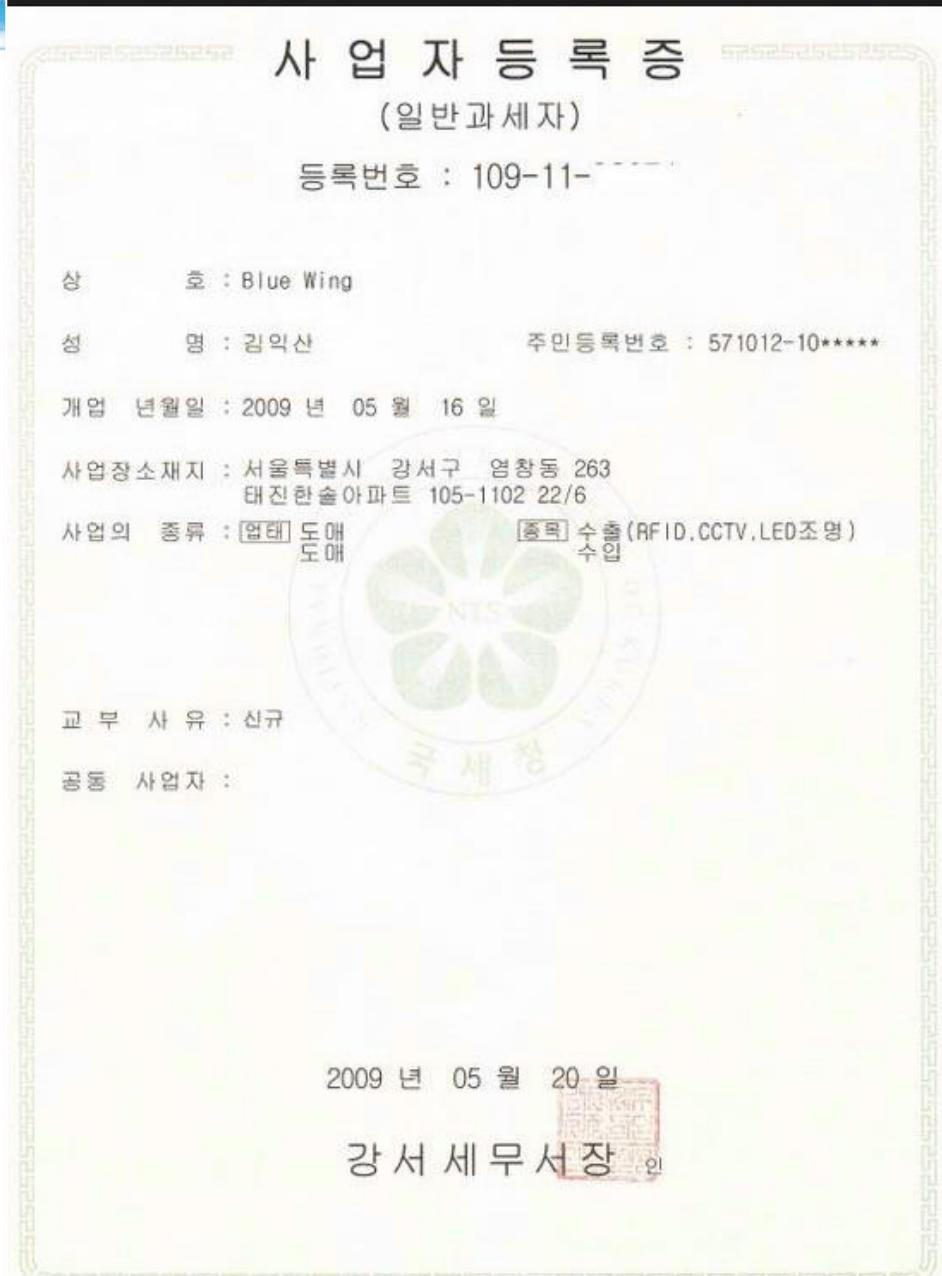
※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실명확인증표의 사본
- ▶ 금융거래시점에 유효하지 않은 실명확인증표
 - ☞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용 불가
- ▶ 사원증 + 주민등록등(초)본
 - ☞ 전역증, 휴가증, 상공회의소나 산업인력공단이 발급한 자격증은 사용할 수 없음

※ 개인사업자 거래시 유의사항

- ▶ 개인사업자는 법인이 아니므로 개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실명확인증표로 사용할 수 없음
- ▶ 또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법인 또는 임의단체가 아닌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정하여 그 대표자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

[참고]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참고]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사업자등록증

(일반과세자)

등록번호 : 142-00-00000000

상호 : 대우미트 (Daewoo Meat)

성명 : 노대호

생년월일 : 1974년 07월 23일

개업년월일 : 2009년 04월 02일

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72번길 10
401(구갈동, 낙원상가)

사업의 종류 : [일반] 도, 소매
서비스

[종목] 축산물, 무역
수입대행

교부사유 : 정정

공동사업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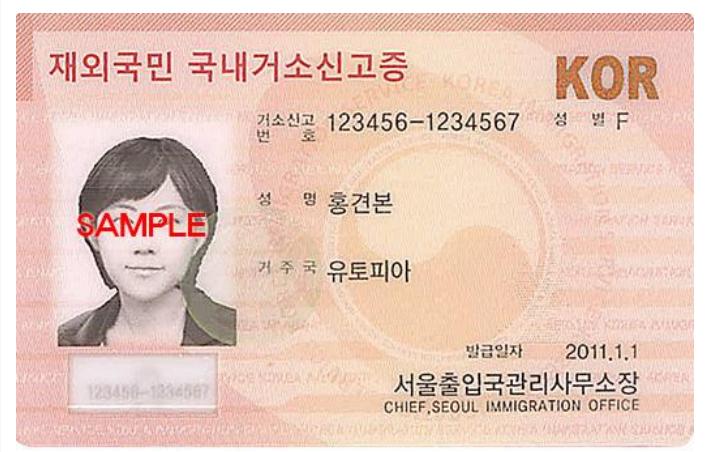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메일주소 :

2012년 04월 03일

용인 세무서장



국세청





실명확인증표의 예시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고유번호 : 314-80-



단체명 : 컴퓨터공학과 동문회

대표자 성명 : 최경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 680909-14*****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72
대덕테크노밸리6단지아파트 605-802 12/9

대표자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672
대덕테크노밸리6단지아파트 605-802 12/9

교부사유 : 신규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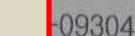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11년 04월 15일

고유번호증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지점)

고유번



-09304

단체명 : (사) 한국문화교육진흥회 충주지부

대표자 성명 : 박동인

법인등록번호 : 184321-00*****

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275

대표자 주소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동 1275 29/2

교부사유 : 신규

(유의사항)

- (1) 이 고유번호증의 부여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및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표자 내점시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실지명의가 가려져 있다면?

→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자실지명의가 모두 나오도록 징구하여 거래

But, 사업자등록증상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명확인 서류로 가능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유형별 실명거래

✓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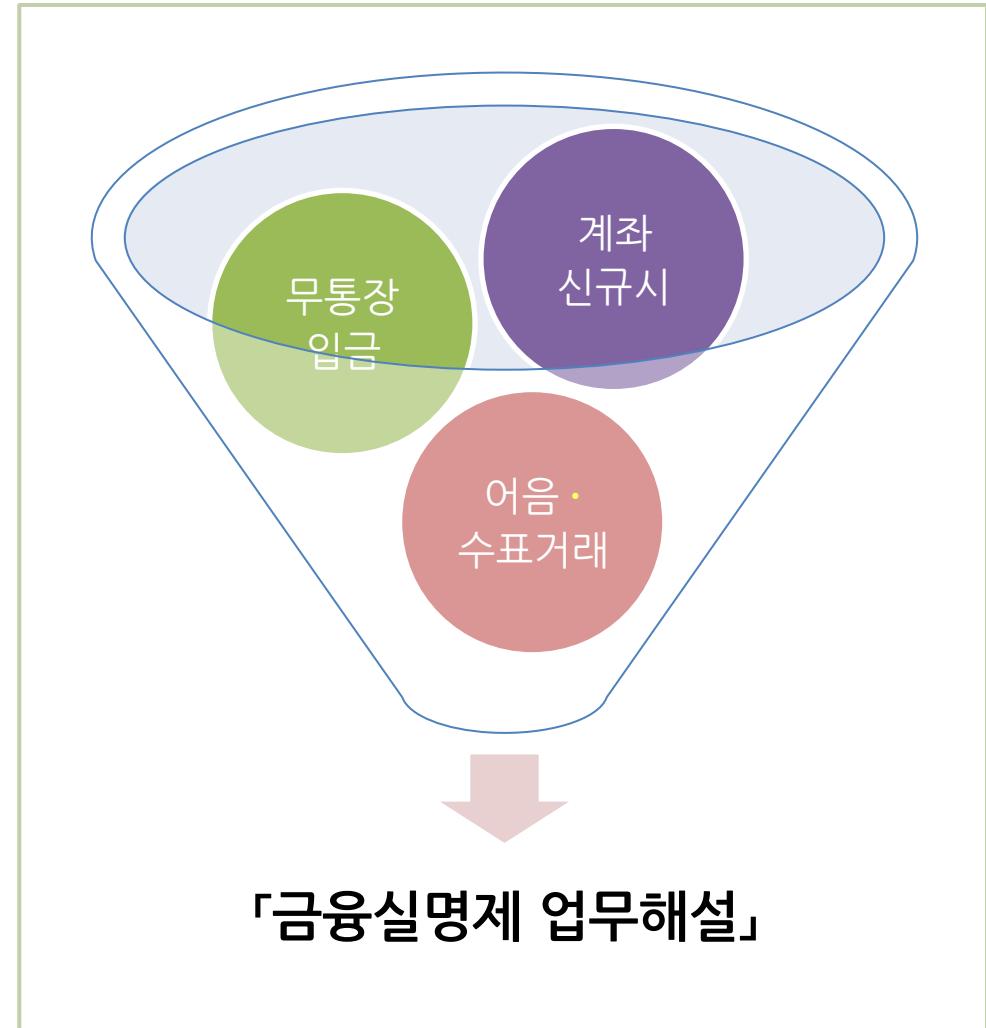
1. 계좌에 의한 거래(신규)

- 개인, 종업원 · 학생 등의
일괄계좌 개설, 재외동포, 외국인,
법인, 임의단체, 외국법인

2.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 CD, 표지어음 등의 거래
- 무통장 입금(송금)
- 어음 · 수표 거래
- 공과금 등의 거래 및 외국환 거래

3. 일반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





금융거래 유형별 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1)

계좌에 의한 거래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신탁), 적립식/거치식예금(신탁) 등

원 칙

- 계좌개설시(신규 및 재예치)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에 의하여 실명을 확인하여 거래원장, 거래신청서, 계약서 등에 “실명확인필”을 표시하고 확인자가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인자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식별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계좌개설시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실명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첨부·보관
 - ☞ 실명확인 의무가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회사가 통제·관리할 수 있는 스캐너 또는 디지털카메라에 의해 스캔(촬영) 후 파일을 별도 보관하거나, 사본출력 후 거래신청서 등에 첨부·보관도 가능

* 기존에 징구한 실명확인증표 사본 등 관련서류 재사용 금지

- 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 인감증명서 징구
 - ☞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을 확인함
(이 경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함)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위임장 : 인감증명서상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거래인감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좌개설신청서에 거래 인감 별도 날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12. 12. 1.)에 따라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에는 인감날인이 아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함

공동명의 신

- 가족대리시 징구하는 가족관계확인서류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등록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2)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개인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개인사업자 포함)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 한함), 실명증표 예시 참조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가족	<p><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다음 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계좌 개설 당시 정확한 사실관계 기재된 것만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인의 가족의 범위 -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조부모, 외손자, 배우자 부모(사위, 며느리 포함) *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예)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대리인	<p><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실명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제출 시까지 보충되지 않은 백지 위임장은 사용불가하며, 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인감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는 동 확인서상의 서명 기재) •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원본 - 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참고] 인감증명서

위임장

- 본인이 귀행과 거래할

예금신규를 위한

실명확인의 제반 절차

를 다음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대리인: ○○○

위임인: ○○○

■ 본인서명란		⑥문서확인번호	(※초서식)
문서확인번호 4877-1414-1204-5440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성명 (한자)	윤XX (尹XX)	시명	윤XX
주민등록 번호	XXXXXX - XXXXXX		
주소	③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또는 ④여권번호		
용도	① 소유권 이전(매매, 중여 등) ②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③ 그 밖의 용도(가동기, 가동기탈수 등)		
	부동산 관련 용도	성명(법인명) 민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민관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가래상대방 등 주소	민관	
수입인	성명 민관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민관			
비고			
발급번호	No. 00000315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한	②발급일자 원 2012년 12월 03일		
①발급기관(시군구)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면장			
유의사항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별색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영문과 한글은 콤마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장(기호)로 다른 사람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해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와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주민등 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백색에 주민등록번호()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입인란은 신용란이 적용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①~④포함 하교. 가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가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저동파에도(내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인, 전세증거증(매수 인의 성명 등), 범인증거증, 보증금 수령증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 수입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요청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 습니다. 다만, 범인사, 범부사 등 자리를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실명판에 자리를 소지자의 성명과 자리를 기재해야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7. 발급 이후에 유통, 수입인 등 기세사랑을 염두로 고려하거나, 이 확인서를 위로 편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 니다. 8. 비고란에는 미생년자 또는 행정체증자 표지와 행정체증자 표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ewon.go.kr)을 통해 발급일-문서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mm × 297mm(특수용지 80g/m ²)			

【별지 제14호 서식】		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	1250 - 31 - 2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있음				
주민등록 번호	1 2 3 4 5 6 - 1 2 3 4 5 6 7	인감증명서	본인 대리 <input type="radio"/>	
성명 (한자)	③주민등록번호 또는 ④여권번호 김영숙 (金英淑)			
주 소 이 동 사 항	인 감 인감			
주 순서	주 소 (통/반)		전 입	
1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 병포리		25 / 2004.02.04 통번집	
2	이하여백			
3				
여행중의 주소		국적 (외국인)		
국외주소지				
부동산 매수자	성명(법인명)	민관	주민등록번호	민관
주 소	민관			
비 고				
1.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 주소이동사항은 "외증주소"로 발급하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천 주소지를 기재하여 발급합니다. 2. 부동산매수자란에는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재하고, 부동산매도용의 경우에는 "민간"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비교란에 기재합니다. 4. 해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 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기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하여 그 아래의 백색에 주민등록번호()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5. 인감보호신청제도는 본인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의 지정하는 대상으로 제한하거나 온라인 발급 등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6. 이러한 인감보호신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민원창구를(www.egov.go.kr) 통하여 「발급일자·인감증명발급사실 확인용 발급번호·주민등록번호·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번호	No. 31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2004년 12월 30일 ② 발급일자 경상북도 포항시남구 구룡포읍장		
사용용도	① 발급기관(시군구)			
※ 사용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민원인이 적절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예시: 근저당설정용,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전세증거증(매수인의 성명 등) 등으로 기재]				
[] 주소지 증명장 : 구룡포읍 210mm × 297mm(특수용지 80g/m ²)				



[참고] 증명서별 세부기재사항

[참고]증명서별 세부기재사항(일반,상세)

구 분	기 재 사 항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 배우자, 현재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나 생존한 자녀에 관한 사항	일반증명서 내용 +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기본증명서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일반증명서 내용 + 개명, 친권, 국적취득 및 회복 등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일반증명서 내용 +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양자 및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일반증명서 내용 +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친생부모·양부모 또는 친양자 및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일반증명서 내용 + 친양자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참고]증명서별 세부기재사항(특정)

구 分	기 재 사 항
기본증명서(친권·후견)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 기본증명서 이외에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추후 확대 예정



[참고]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

✓ 가족대리 시 가족관계 확인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으로 징구

구분	기재사항	
공통사항	본인의 등록기준지 및 인적사항(성명, 성별, 본(本), 출생년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증명서 (기재범위-3대)	일반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인적사항
	상세	부모(입양의 경우 양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인적사항 - 모든 자녀 : 생존한 현재 혼인 중의 자녀 및 사망한 자녀, 혼외 자녀, 전후 자녀
기본증명서	일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상세	본인에 관한 모든 사항 - 출생, 사망, 국적상실 및 <u>개명/실명번호변경</u> , <u>성(姓)·본의 창설 및 변경</u> , <u>국적취득(귀화) 및 회복</u> , <u>친권/후견/후견감독인/특별대리인</u> , <u>금치산/한정치산</u> , <u>친생부인/인지</u> , <u>실종선고/부재선고</u> (※ 금치산/ 한정치산에 관한 사항 : '18.6.30까지 유효)
	특정	본인의 현재 유효한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증명서	일반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현재 배우자의 인적사항
	상세	혼인 및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 배우자 및 과거 배우자(성명만 기재)의 인적사항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상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과거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인적사항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일반	현재의 친양자에 관한 사항,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상세	친양자입양 및 파양에 관한 모든 사항, 현재·과거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의 인적사항



[견양] 가족관계증명서

[별지 제6호 서식]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본인(金本人)	1975년 01월 01일	750101-1234567	남	金海



발급 기준인
본인 확인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부	김양부(金養父)	1953년 01월 01일	530101-1234567	남	金海
모	이양모(李養母)	1954년 01월 01일	540101-2345678	여	全州

배우자	박여인(朴女人)	1978년 01월 01일	780101-2345678	여	密陽
-----	----------	---------------	----------------	---	----

자녀	김외일(金外一)	1998년 01월 01일	980101-1234567	남	金海
자녀	김중이(金中二)	2006년 01월 01일	060101-3234567	남	金海
자녀	윤양자(尹養子)	2009년 01월 01일	090101-4345678	여	坡平
자녀	김중삼(金中三)	2012년 01월 01일	120101-3234567	남	金海
자녀	김양자(金養子) 자방	2014년 01월 01일	140101-4345678	여	金海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을 현 출한 상세증명서입니다.



[견양] 기본증명서

[별지 제11호 서식]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234
-------	---------------------

구분	상세내용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작성일] 2008년 01월 01일 [작성사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구분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
본인	김중이(金中二)	2006년 01월 01일	060101-3234567	남	金海

일반등록사항

구분	상세내용
후견	[법정후견인의취임일] 2010년 01월 02일 [법정후견인] 김친족 [법정후견인의주민등록번호] 800101-2345678 [신고일] 2010년 01월 20일 [신고인] 김친족 [처리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급 기준인
본인 확인



위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읍·면)장 ○ ○ ○

직인

* 위 증명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라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입니다.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3)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미성년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증, 여권,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학생증 +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 (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족관계 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 지 설명 확인서 원본
	법정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법정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 사본, 법정대리인 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불 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 그럼 미성년자의 계좌개설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을까?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4)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재외국민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16.6.30.까지 유효),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대리인 (영사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가능)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영사확인(또는 해당국에서 공증(아포스티유))을 받은 위임장 (번역공증까지 받은 것을 의미-공용어 작성시에는 번역공증 생략가능)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영사확인 위임장 또는 공증을 받은 위임장 원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위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서류 ※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 상 실명확인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필요 - 국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상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명의인과 실명확인증표상의 명의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PRTA입 여권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된 국내거소사실증명원 등) 및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추가 징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실명확인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이거나 국내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 경우 징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5)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여권, 국내발급 운전면허증•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대리인(영사확인 또는 공증을 받은 경우 포함)			
외국 국적동포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다음중 하나)(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위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서류 ※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 상 실명확인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필요•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가족관계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실명확인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이거나 국내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일 경우 징구)-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원본

* 공증이라 함은 ①영사확인, ②해당국 공증사무소의 공증과 이에 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 ① 또는 ②의 서류를 번역공증한 것을 의미 (공용어 등으로 작성되어 문서의 의미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번역공증 생략 가능)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6)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외국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여권, 여행증명서, 국내발급운전면허증 ※ 투자등록증(증권 등 거래시), 외국인투자신고수리·인가서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다음중 하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에서 공증을 받은 위임장 -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 위임장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가 표시된 경우에 한함)(다음 중 하나)(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만 유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해당국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위 증명서를 번역공증한 서류 ※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 상 실명확인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징구 필요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족관계확인서류 원본 또는 사본,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실명확인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해당국 가족관계증명서이거나 국내발급 가족관계 증명서일 경우 징구),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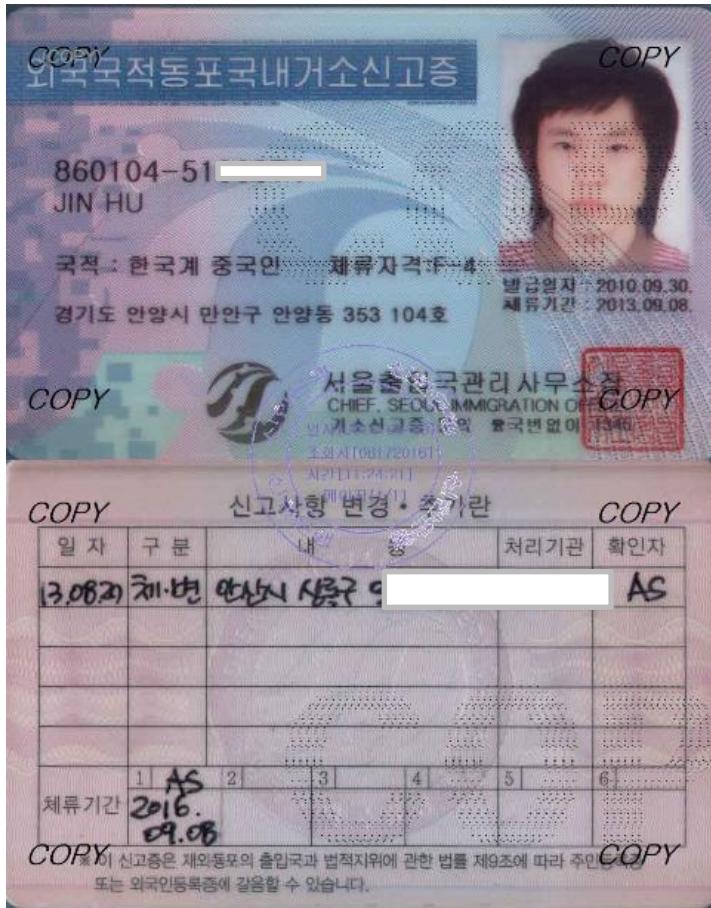
▶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 (통합단말 #7013)

법무부의 외국인정보 DB를 중개하여 재한 외국인의 식별정보 및 체류정보를
온라인상으로 확인함으로써 외국인신분증의 진위를 판별하는 시스템

의무적인 조회서비스가 아니므로
의심스러운 경우 이용



실명확인증표 사례





실명확인증표 사례

(COPY)

대한민국 국민인 이 여권소지인이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편의 및 보호를 배풀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외교통상부장관



A10968219M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by
requests all those whom it may concern to permit the bearer,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ass freely without delay or hindrance and, in case of
need, to afford him/her every possible assistance and protection.*

소지인의 서명

Signature of bearer CHO YOUNG MI





(참고) 아포스티유 서류

참고하세요



▣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교부 및 법무부가 협약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하여 진위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을 아포스티유(Apostille)

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확인서가 부착된 공문서는 공관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의 효력을 인정 받게 됩니다.



예금 신규 시 징구서류와 은행거래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실명확인서류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2016.08.16기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 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쿠제도, 피지, 인도, 마살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록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물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란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아포스티유 서식 (가입국 공통)

APOSTILLE (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	
①문서 발급자의 성명	1. Country : 국가
②문서 발급자의 직위	This public document
③문서발급기관	2. has been signed by (①)
④발급장소	3. acting in the capacity of (②)
⑤발급일자	4. bears the seal/stamp of (③)
⑥Apostille 발급기관	Certified
⑦발급번호	5. at (④) 6. (⑤)
⑧Apostille발급기관의 스탬프	7. by (⑥)
⑨Apostille 발급 담당자의 서명	8. No (⑦)
	9. Seal/stamp (⑧) 10. Signature (⑨)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이라면?

해외에서 발행된 문서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A. 해외에서 발행(작성)된 문서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영사확인이란?

- ☞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를 ‘[영사확인](#)’ 이라 합니다.

2. 영사확인절차



정말 쉽게 알아보는 영사확인절차!!

- Step1. 공문서 : 추가 절차 없음 2단계로…(ex. 해당국 가족관계 서류 등)
사문서 : 해당국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 (ex. 상속위임장 등)
- Step2. 해당국 외교부를 통해 1차 영사확인 (국가별 담당기관 상이함)
☞ 해당국내 공증사무실의 공증 또는 국가발행서류가 맞다는 확인
- Step3. 해당국에 있는 한국영사관을 통해 2차 영사확인
☞ 해당국 외교부에서 확인한 서류라는 확인
- Step4. 한국에 제출

결론!!! 최종적으로 금융회사는 해당 문서에 우리나라 영사관의
‘영사확인’ 있는지 확인 후 거래하면 됨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한 거래(7) >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명의인	신청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법인 (국가·지방자 치단체 포함)	대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원본 ※ 고유번호증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동일금융기관 내부에서 원본을 대조·확인 (확인점포 및 확인자 표기)한 사업자등록 증(고유번호증) 사본도 가능 • 대표자의 실명확인증표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법인과 대표자의 실명확인증 표 사본,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음 중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대표자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사용인감계(계좌개설의사와 계좌개설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과 대리인의 실명확인 증표 사본 -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및 법인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 관계 확인서류 원본 -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서

✓ 법인 또는 임의단체의 실명확인시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도 함께 하여야 함

※ 사용인감계 최초 신청(제출) 시 법인인감증명서를 징구함

- 추가 계좌개설시 사용인감계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에 제출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대조·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징구는 생략 가능([사용인감계 계좌 개설시 매번 징구, 인감증명서 3개월초과여부 확인](#))

※ 법인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 거래시 법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 징구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예시

인 감 증 명 서	
상 호 :	주식회사 케이
본 점 :	아산시 음봉면 월량리 151-1 대표이사 양찬 (621101-)
위 인감은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04년 03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등 기 관 번호	
수수료 1,000원 영수함.	
8000153028117011300041010220110120 / AEAD-0JJL4 1 1000 1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1)

의의

- 통장.거래카드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증권.증서.채권(통장거래 제외).어음.수표 등을 매매. 상환.환급.발행 및 지급 등을 하는 금융거래 형태

원칙

- 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신청서, 수표발행의뢰서, 증서 및 수표의 뒷면 등에 명의인의 실명을 기재.확인하고 적당한 여백에 실명확인필을 날인 또는 서명. 단, 전산으로 실명거래의 확인자가 인자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필요시 실명증표 사본 보관)

CD, 표지어음, 개발신탁, 채권(통장거래 제외) 등의 거래

☞ 실명확인 시기 : 발행시, 지급시 및 교환회부시

명의인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보관서류
본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실명확인증표 보관의무 없음
대리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실명확인증표의 보관의무는 없으나 위임장 또는 가족관계확인 서류는 보관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2) > 무통장 입금

무통장입금 (송금)

✓ 인출계좌 예금주와 입금
의뢰인의 명의가 일치하
지 않으면?

★ 100만원 이하 (현금) -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 생략가능

★ 100만원 초과 (현금)

- 본인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및 실명확인증표로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함
- 대리인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을 확인한 후 날인 또는 서명

※ 실명확인된 계좌에서 출금하여 입금하는 경우 (전자적 수단에 의한 이체 포함)

- ① 출금금액 범위내 송금 : 입금의뢰서에 출금계좌번호 표시하여 실명확인에 갈음
(인출계좌의 예금주와 입금의뢰인(송금인)의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만 가능)
- ② 출금금액 초과하여 송금 : 일부대체 금액에 추가금액을 합하여 송금하는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인출계좌번호 기재로 실명확인에 갈음할 수 없음

★ 어음 · 수표 입금

- 본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 ① 무통장입금의뢰서(당행 전표 : 입금하실때)상에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 ② 수표, 어음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갈음

- 대리인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①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연락처 기재 후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 ② 수표, 어음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에 갈음

실습 1 - 현금을 당행 통장으로 입금



통장을 지참하여 현금을 입금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을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또한 통장을 지참한 입금의 경우 별도로 '입금하실때'전표를 작성해야 하나요?

실습 2 - 현금 무통장입금시 실명확인 방법(1백만원 초과)

입금하실 때 (무통장 · 타행환 · 수표발행)

실명 확인
필수

계좌번호	110-103-12345*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756-050*
금액	금 일백육십만 원			주민등록번호	821227 123456*		
입금은행 (타행입금시)	예금주 (받으실분)	김신한	대리인	CMS (기타요청)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호	-		

전결권자
복수결재자
작성자



설명 확인
慶國
전담감사자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할까요?



※동일 금융회사등에서 본인 또는 그 대리인
이 같은 날 동일인에게 100만원(실명확인
이 생략되는 각종 공과금 등을 포함하지 않
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입금하는
것을 금융회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무통장입
금시의 실명확인방법 (실명확인증표에 의
해 확인)에 따라 실명확인

....

실습 3 - 현금 무통장입금시 실명확인 방법(1백만원 이하)

입금하실 때 (무통장 · 타행환 · 수표발행)

실명 확인
생략

계좌번호	110-103-12345*			성명	홍길동	전화번호	756-050*
금액	금 오만---	원	20** 년 12 월 12 일	(보내시는분)	주민등록번호	821227 123456*	
입금은행 (타행입금시)	예금주 (받으실분)	김신한	대리인	CMS (기타요청)	성명	신경민(마이 관 계)	
				주민등록 번호		-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할까요?



어음·수표 거래



★ 자기앞수표 발행

- 현금 또는 일부현금을 수납하여 수표발행
 - ☞ 본인 : 수표발행의뢰서(입금하실때 전표)상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하고 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 ☞ 대리인 : 수표발행의뢰서상에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날인 또는 서명
- 계좌에서 인출하여 수표발행 : 수표발행의뢰서('입금하실때' 전표)에 인출 계좌번호 표시

★ 어음·수표 입금 및 지급

- ① 현금 지급시 ☞ 어음·수표 뒷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하고 실명확인후 날인 또는 서명
- ② 통장에 입금 ☞ 어음·수표 뒷면에 입금되는 계좌번호 기재
- ③ 무통장 입금 ☞ '입금하실때' 전표에 실명확인 및 어음수표 뒷면에 입금계좌번호 기재
- ④ 실명확인 생략가능한 각종 공과금 및 대출원리금 수납
 - ☞ 뒷면에 납부 명의인 성명 및 납부내용 또는 대출금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

✓ 번호가 연속된 자기앞수표를 동일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맨앞장과 맨뒷장의 뒷면에 실명확인 할 수 있음

실습 4 - 현금으로 자기앞수표 발행시 실명확인 방법

입금하실 때 (무통장 · 타행환 수표발행)

수표발행

홍길동 756-0506
821227 123456*

10만원권 2 매 ₩ 200,000
50만원권 매 ₩
100만원권 매 ₩
기타금액 ₩
발행합계 ₩ 200,000

실명 확인 필수

국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할까요?

보기

한국은행
오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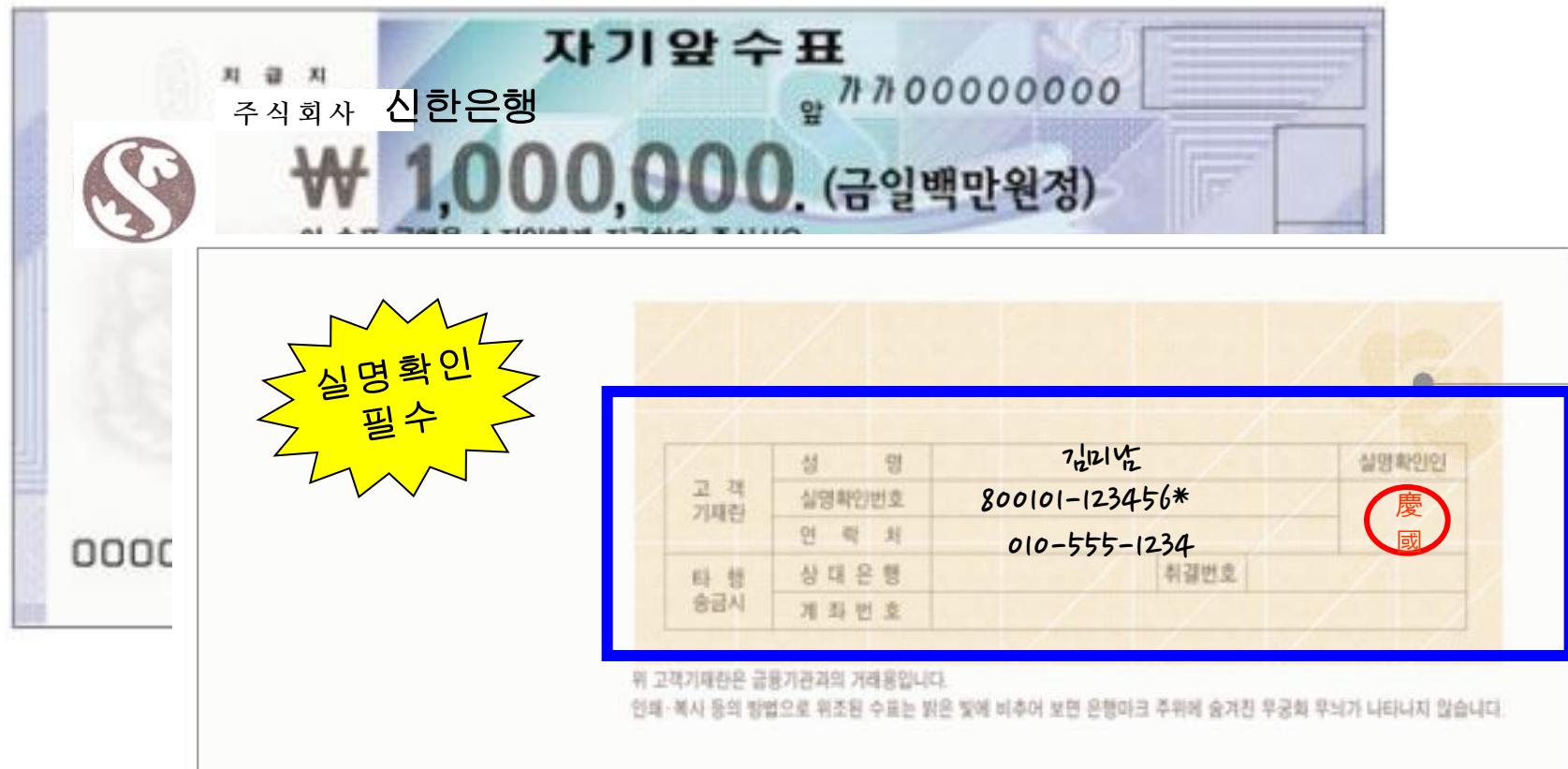
50000

SSW

전결권자
복수결재자
작성자
실명확인
국
전담감사자



실습 5 -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실명확인 방법



이 경우 주민등록증을 징구하여 실명확인을 해야 할까요?

실습 6 - 수표 무통장입금시 실명확인 방법

입금하실 때 (무통장 · 타행환 · 수표발행)

계좌번호	110-103-123456		
금 액	금 일백만 원 2018년 1월 03일		
입금은행 (타행입금시)	예금주 (받으실분)	김신한	
신 청 인 (보내시는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CMS (기타요청)	홍길동 756-050* 821227 123456*	
대 리 은 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전성인과의 관 계	

여러계좌로 송금하시는 경우

은 행	예금주	계 좌 번 호	금 액
수	10만원권 50만원권	매	₩

실명 확인

慶國

고객기재란

성 명	110-103-123456	실명확인인
실명확인번호		
연락처		
타행 송금시	상 대 은 행	취결번호
	계 좌 번 호	

위 고객기재란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용입니다.
인쇄·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수표는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은행마크 주위에 숨겨진 무궁화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 타행송금, 통장없이 수표발행시 실명확인증표 제시 및 연락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금하실 때 (재무지원부 2009. 1 개정)

* 수취인 성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취계좌번호 기준으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2-700-0025) (20.0×13.0 백상지 70g/m²)

실습 7 - 약속어음을 당행 통장으로 입금



통장을 지참하여 **약속어음** 등을 입금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실습 8 - 당행 자기앞수표를 당행 통장으로 입금



통장을 지참하여 **당행 자기앞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지요?

당행 자기앞수표의 입금과 타행 자기앞수표의 입금은 그 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을까요?

<참고> - 어음 · 수표 뒷면에 입금되는 ...

거래하신 내용 (예금 및 대출)

(“-” 표시는 대출잔액임)

1	내용	찾으신금액	입금시금액	잔 액	거래점
1 110-205-					첫거래 고맙습니다
2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3	이상품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입니다.				
4	061218현금 신규		*10,000	*10,000	광교영업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입금계좌번호 기재로
실명확인 갈음함

위 고객기재란은 금융기관과의 거래용입니다.
인쇄·복사 등의 방법으로 위조된 수표는 밝은 빛에 비추어 보면 은행마크 주위에 숨겨진 무궁화 무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전자통장을 만드시면.....

종이통장을 보안성이 뛰어난 금융IC전자통장으로 전환하시면 은행창구, 자동화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 명

실명확인번호

연락처

타행
송금시

상대은행

취결번호

계좌번호

110-205-12345*

실명확인인



금융거래 유형별실명거래 방법 - 계좌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4) : 공과금 등의 거래

납부고지서 등에 납부명의자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아래의 공과금 등은 실명확인 생략

※ 성명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납부자에게 기재도록 함

- 국세, 지방세, 벌과금(벌금, 과태료, 범칙금 등)
- 법원공탁금, 정부・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수납
-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 전기요금, 신문구독료, 보험료
- 아파트 관리비
-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사용료, 전화사서함이용)
-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 유치원, 초・중・고・대학(원)생의 등록금 및 수업료
- 신용카드대금, 신문구독료, 보험료
- 100만원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 실명확인생략대상 공과금이 아닌 기타 은행지로장표 또는 각종 납부고지서에 의한 입금은 무통장입금의 경우와 동일(100만원 이하는 실명확인 생략 가능)

○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계좌출금 포함) : 실명확인 생략

○ 수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 고지서 : 실명확인 생략
- 수 표 : 수표뒷면에 납부명의자의 성명과 납부내용을 기재
(실명확인 생략 가능)

※ 어음·수표·자기앞수표 거래유형별 실명확인방법

구분	거래유형	거래자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	비 고
어음·수표 자기앞수표의 입금	무통장 입금 (송금)	본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 본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하고 -어음·수표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대리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무통장입금의뢰서상에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고 - 수표·어음 뒷면에는 입금계좌번호를 기재
	통장입금	본인	생략	-어음·수표 뒷면에 입금되는 계좌번호를 기재
		대리인		-어음·수표 뒷면에 납부명의인의 성명 및 납부내용을 기재
	공과금 수납	본인	생략	-어음·수표 뒷면에 대출금의 계좌번호를 기재
		대리인		-어음·수표 뒷면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어음·수표 자기앞수표의 지급	현금 지급	본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어음·수표 뒷면에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수표발행의뢰서상에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실명확인 후 날인 또는 서명
자기앞수표의 발행	현금 또는 일부현금 수납	본인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수표발행의뢰서상에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와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실명을 확인하고 날인 또는 서명
		대리인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수표발행의뢰서에 인출 계좌번호 표시
	계좌에서 인출	본인	생략	-수표발행의뢰서에 인출 계좌번호 표시
		대리인		

[참고] 증여세 감면 범위

- ✓ 배우자 : 6억원
- ✓ 자녀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 부모 : 3천만원
- ✓ 기타 친족 : 5백만원
- ※ 주의 - 10년간 합산금액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부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금융거래가 금지 됩니다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 금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테러자금조달행위 및 압류·기압류 등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목적이 없는 선의의 차명거래는 가능



1. 사례
-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 모임 회비 관리를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 명의의 계좌에 예금하는 경우
 -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